

**[사회조사과] 가구부문 경상조사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**

호남지방통계청에서는 경상조사 (결원대체)기간제근로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4. 1. 24.  
호남지방통계청장

**1.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**

관할부서	모집구분	모집인원	계약방법	채용기간	수당	비고
사회조사과	기간제근로자(결원대체)	2명	근로계약	'24. 2. 5. ~ '24. 3. 29.	70,370원	인력 수급 여건에 따라 채용기간 변경 될 수 있음

**2. 담당업무**

담당업무	주요 담당업무
통계조사	· 해당부서 관할지역내 현지 조사업무 수행 - 호남청: 광주광역시, 나주, 화순, 장성, 담양, 영광, 함평, 곡성 · 가구부문 경상조사(가계동향조사, 경제활동인구조사 등)

**3. 근로조건 및 보수**

- 근무시간 및 형태 : 주 5일제(40시간), 1일 8시간(9시~18시) 근무
- 보수
  - 일 급 : 70,370원
  - 기 타 : 법정수당(정액급식비 140천원, 표본관리비 200천원 등 )

**4. 채용(모집)방법**

- 1차 서류전형
  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
- 2차 면접전형(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  -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,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
-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
  -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
  - 면접(2차)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
  -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·의결에 따른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
- 국가유공자 등(취업지원 대상자) 가점
  - 1차, 2차 전형에 각각 적용
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「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5조, 「5·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 부여

5점	10점
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	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
- 애국지사의 가족,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,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	-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,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
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	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,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
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	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
	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

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	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
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	5·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
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제24조 및 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 부여

5점	10점
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	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
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	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
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	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
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	

※ 국가유공자법 제31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(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(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5. 응시 자격요건(모두 충족)

-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-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및 출장지역 업무 수행 가능한 자
-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
-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
- 채용서류 미비나 거짓 작성하지 않은 자
-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

- 대상처 방문조사, 응답자 설득, 전화 질의조회, 전산처리 등 해당업무의 수행이 원활한 자
- 그 밖에 당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거주지, 특정자격증 소지자 등을 제한할 수 있음
- 채용관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채용하고, 도서지역의 경우 지역 전담제를 위한 현지인을 기간제근로자로 특별채용(거주지 제한경쟁)할 수 있음
-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
-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 우대
  - ※ 저소득층의 범위 :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제2호·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이상인자,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
  - ※ 다자녀보육가구 :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
  - ※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가점 부여
- 「통계청 공무원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(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(「국가공무원법 제33조」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), 기타 관련법령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## 6. 전형일정

- 채용공고 : 2024. 1. 24.(수) ~ 2024. 1. 31.(수) 18:00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24. 2. 1.(목) 13:00 이후
- 면접일시 : 2024. 2. 2. (금) 11:00부터, 장소 1층 교육실 예정
- 최종합격자 발표 : 2024. 2. 2.(금) 16:00 이후
  - 통계청 홈페이지 (<http://kostat.go.kr>) 공지사항에 공고

## 7. 지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4. 1. 24.(수) ~ 2024. 1. 31.(수) 18:00까지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
  - 방문접수는 평일 09:00~18:00 내에 접수가능
  - 접수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서류전형 접수에 반영되지 않음
  - 접수장소 : 아래 참조

담당자	주 소	전화번호
신 수 정	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나라키움광주통합청사 1층 고객지원실	062-370-6102

※ 응시원서 등 제출 후,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 8. 제출서류

- 응시원서 1부(붙임1 참조)
- 자기소개서 1부(붙임2 참조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 이용 시)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(붙임4 참조)
-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(필수)
- 자격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- 운전면허증 1부(해당자에 한함)
- 표창 내역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탈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(장애인증명서,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기술자격증,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) 제외
- ※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, 반환 청구시에는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반환(단, 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)
  - 채용서류(응시원서, 자격증명서, 기타 증명서류) 반환: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 합격자 공고일(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)로부터 15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고, 20일간 신청을 받음
  - 청구기간: 2024년 2월 16일 ~ 2024년 3월 6일

## 9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
-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
-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·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
-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지는 부정합격 시 관련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
-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 조치 실시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





